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 등 강화>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423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5.
- (3) 회 부 일 : 2024. 7.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등의 사건 관계서류 등에 관한 열람·등사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제2항, 제59조의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 제59조의17(「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본다.
제59조의17 ~ 제59조의19 (생략)	제59조의18 ~ 제59조의20 (현행 제59조의17부터 제59조의19까지와 같음)

2. 개정배경

-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음.

한편,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사례에서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 이에 이 같은 입법상 공백을 보완하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익보호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음(2024. 7. 5.).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15호)은 ‘특정강력범죄’²⁾ 피해

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뒤 성폭행을 하려고 끌고 가던 CCTV가 공개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사건 피해자가 직접 2023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비공개로 출석하여 재판 절차 등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등 형사소송 재판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1심 공판에서 CCTV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이 의심했다.”

“재판부에 공판 기록을 요청해도 수차례 거절당했고, 민사소송을 걸라는 얘기도 들었다. 1심이 끝나고서야 기록을 받았다.”

유종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가해자 용서하나”. 조선일보, 2023.10.2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0/IM3CU4FXCJAJPP6W4NGXHGTIY/)
류미나, [국감현장]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 연합뉴스, 2023.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078900001>)

2) 일반 살인, 강도,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9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위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이를 준용하는 유사한 취지의 총 6개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음.

소관위원회	의안번호 및 의안명
여성가족위원회	[22014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2014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2014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2014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2014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220142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3. 검토의견

□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여 변호사의 경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②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등에 있어 의견 진술, ③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³⁾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어 이미 동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살인, 강도 등 피해자들에게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면서 준용 규정을 「특정강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참고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1항에는 “장애인학대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학대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개정되어 2024.8.14.부터 시행 예정임

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일원화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 또한, 추가적으로 사건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와 관련해서는 신설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⁵⁾를 준용하도록 하는 안 제59조의17을 신설하여,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및 증거보전절차 관계기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허 결정 시 불복 및 이유통지 절차를 마련하였음.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등(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법원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 있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 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불복 가능함.⁶⁾

-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피해자들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피해자들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⁷⁾

6) 「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6조(준항고) 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 ②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09호)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423호)	
	제59조의15제2항	제59조의15제2항	제59조의17 신설
준용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6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5제2항~제5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3 및 제8조의4항
변호사	•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조사에 참여하 여 의견 진술 • 피의자 심문, 증거 보전절차 등에 있어 의견 진술 • <u>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열람 및 등사</u> • 모든 소송행위에 대 한 포괄적인 대리권	•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조사에 참여하 여 의견 진술 • 피의자 심문, 증거 보전절차 등에 있어 의견 진술 • 모든 소송행위에 대 한 포괄적인 대리권	
검사	• 피해자에게 변호사 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	• 피해자에게 변호사 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	
피해자등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	-	• <u>검사가 보관하고 있 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u> ✓ 검사가 보관하고 있 는 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 가 하여야 함 ✓ 검사가 허가하지 않 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함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423호)	
	제59조의15제2항	제59조의15제2항	제59조의17 신설
준용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제6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5제2항~제5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3 및 제8조의4항
			✓ 「형사소송법」 제 409조 및 413조부 터 제418조에 따른 불복신청 • <u>공판기록 등 열람· 등사</u> ✓ 소송기록의 열람·등 사 신청 시 재판장 은 결정으로 허가하 여야 함 ✓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 람·등사 신청 시 재 판장은 결정으로 허 가하여야 함 ✓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 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과 관련한 열람·등사권의 신청주체와 신청범위 등이 확대될 수 있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의 예외적 불허 시에도 불복절차를 보장하여 피해자등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접근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열람·등사 신청이 남용되는 경우,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⁸⁾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⁹⁾

< 개정안에 따른 변화 >

구분	열람·등사권		
	현행		개정안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 준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 신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15호) 제8조의3 및 제8조의4항 준용
신청주체	변호사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신청범위	법원이 보관 중인 공판기록과 증거보전절차 관계 기록	<	- 법원이 보관 중인 공판기록과 증거보전절차 관계 기록 -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 기록
허가여부	재판장 재량	➡	검사 또는 재판장의 원칙적 허가, 예외적 불허
불허 시 절차	조건부 허가 또는 거부 시 이유 통지 및 불복절차 없음	➡	- 검사 또는 재판장의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에는 반드시 이유 통지 - 검사의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8) 조성용. (2006).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 인권과 정의, (354), 174-192.

9)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발의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126554호)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할 경우, 열람·등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에는 ① 무제한적인 열람·등사권의 허용이 아니라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점,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현저 또는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등사권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 ③ 열람·등사권 허가 시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의견 제시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및 변호사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을 동시 개정 중이며, 여성가족부에서도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인신매매방지법」을 동시 개정 중으로,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해당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관련 법률 및 의안 조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 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

4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검사 또는 법원의 열람 또는 등사 불허가 사유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불허 시 불복절차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409호)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과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